

경운대학교 취업지원센터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취업 기회를 발굴·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본 센터는 경운대학교 취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 삭제 <2019.03.01.>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4조(구성) ① 센터는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.<개정 2020.10.01.>

② 센터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취업지원 업무를 주관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<개정 2020.10.01., 2020.12.01.>

③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업무)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<개정 2020.10.01., 2021.12.01.>

1. 취업 현황 통계 조사분석, 진로 정보 및 고용동향 등 취업 지표 관련 업무
2. 취업상담 및 취업·직무·적성 관련 진단·검사 업무
3.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·운영
4. 취업전담교수제 운영 및 교육지원
5. 각종 취업지원 사업의 행정 지원
6. 취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재학생 및 산업체 수요조사·요구도조사
7. 진로·취창업지원위원회의 주관부서로서의 역할 수행
8. 기타 취업과 관련되는 업무

[제목개정 2020.10.01.]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업무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7인 내·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9.03.01.>

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9.03.01.>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센터의 직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20.10.01.>

1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및 결과
2. 운영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·장비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
5. 기타 필요한 사업

제4장 취업전담교수 <개정 2020.10.01.>

제8조(취업전담교수) ① 취업전담교수는 센터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3.01., 2020.10.01.>

② 취업전담교수는 학생 취업상담 및 취업통계조사, 고등교육통계조사, 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등 체계적인 취업지도 역할을 수행한다. <개정 2019.03.01., 2020.10.01.>

제9조 삭제 <2019.03.01.>

제5장 취창업지원위원회

제10조 삭제 <2019.03.01.>

제11조 삭제 <2019.03.01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적용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20.12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.

부 칙<2021.12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.